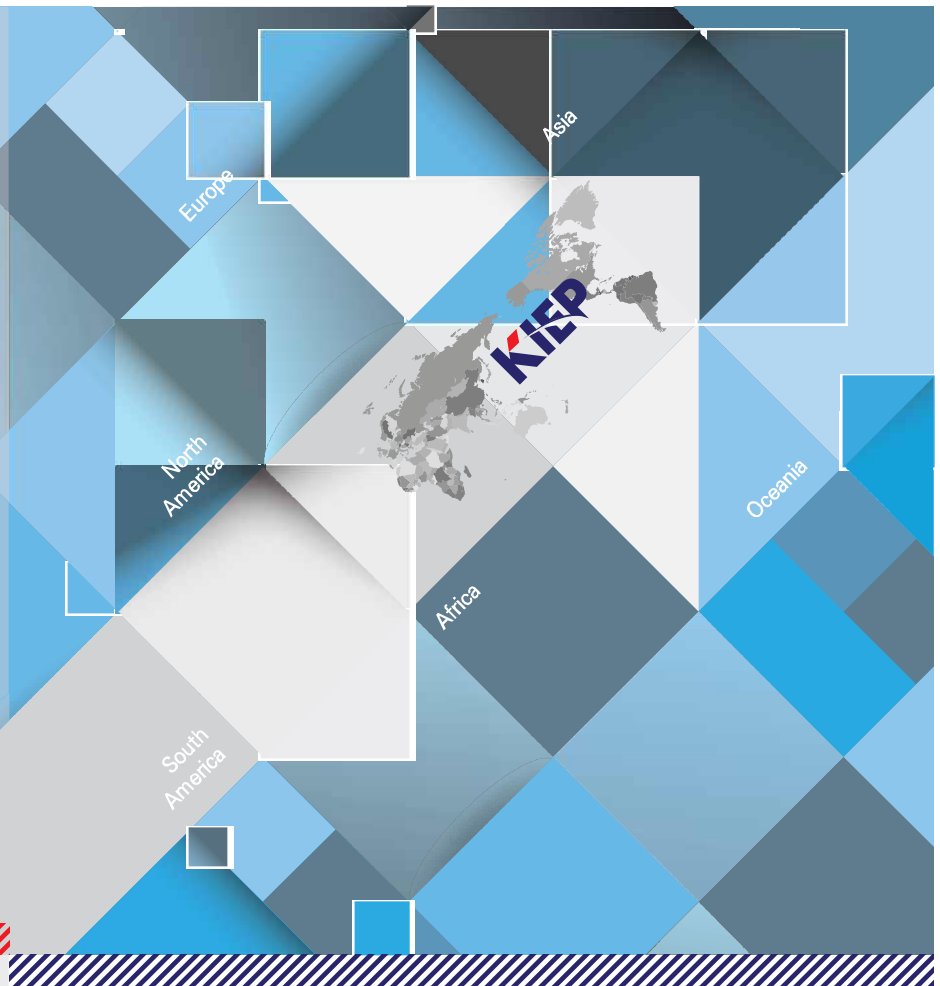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7-05

2017년 1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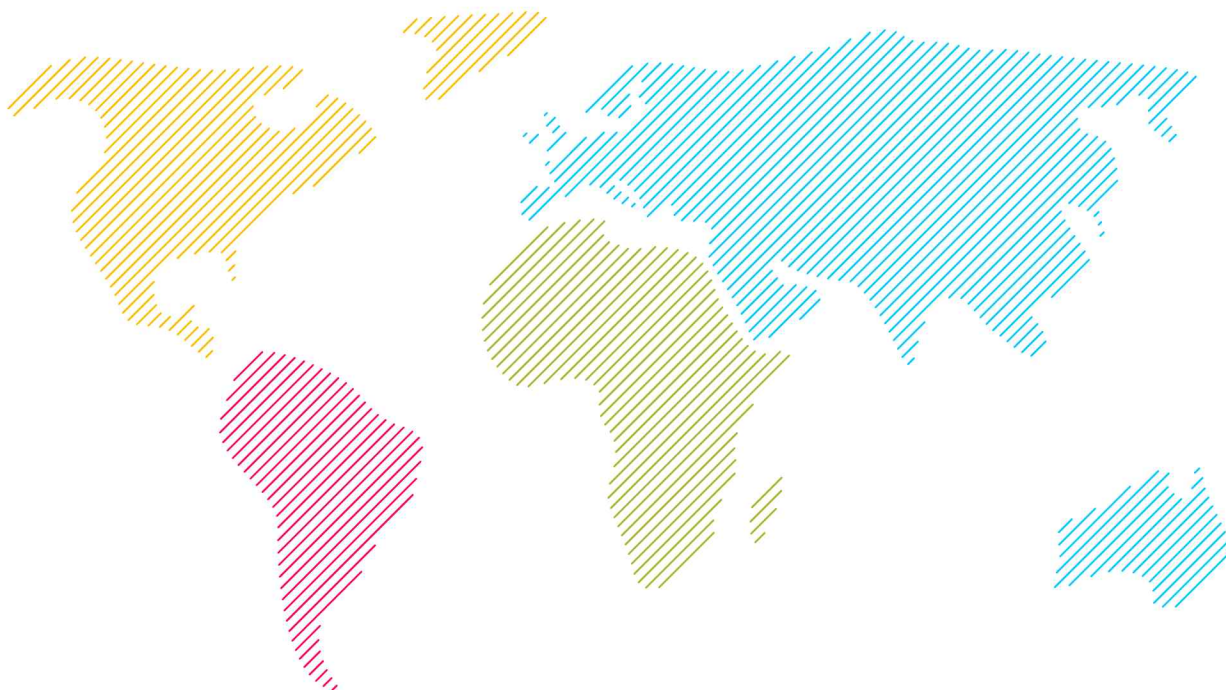
#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 변화 및 시사점

조고운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 변화 및 시사점

### 요약

- ▶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 변화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개정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중국은 외자은행 관리 조례,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 등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점 운영자금 제공, 설립 전 영업기간, 외자비율 등의 제한 조건을 완화함.
  -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또한 1995년 발표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출자비율 상향 조정,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등 금융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금융서비스업 분야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시장진입 제한과 내국민대우 조건을 명시한 것은 글로벌 표준에 근접해가는 조치로 평가됨.
  -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여러 법·규정에 산재해 있는 외자 진입 제한 관련 조항들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함.
-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한 이래 외자진입 제한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 대외개방을 확대해왔으나, 외자 금융기업은 대중국 투자에 있어 '진입' 단계와 '진입 후 영업' 단계에서 여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진입 단계에서는 외자 금융기업의 진입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이 까다로움.
  - 진입 후 영업 단계에서는 업무 범위, 지점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 면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현지화의 어려움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수익성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자국 금융시장이 미성숙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이 대외개방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개방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과정에서 세부 금융영역 및 지역별로 개방 속도에 차이를 보임.
- ▶ 중국 정부당국은 향후 금융서비스업 개방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업은 중국의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관련 정책 변화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애로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극복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국시장 진입에 있어 기진출 한국 금융기업은 여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외자 진입 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데 중국 정부당국은 향후 금융서비스업 개방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바,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업은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이나 조치의 변화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자 금융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법인 및 지점을 운영하면서 정보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자체적인 극복 노력이 필요함.



## 차 례

### 1. 서론

### 2.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 관련 제도 및 규정

- 가. 외자 금융기업의 대중국 투자 절차
- 나.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 규제 현황
- 다. 중국 금융개혁시범구를 통한 금융 개방 사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 3. 한국의 대중국 금융 직접투자 현황

- 가. 한국의 대중국 진출 금융기업 현황
- 나. 기진출 금융기업의 애로사항

### 4.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1. 서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한 이래 외자진입 제한 완화를 통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자 금융기업 투자 제도<sup>1)</sup>를 개선해왔음.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국 제조기업이 중국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들의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외자은행의 중국 진출도 함께 추진됨.
  - 한국의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연계하여 중국 내 점포를 추가로 개설함으로써 영업기반을 확대해왔음.
-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된 것은 2001년 WTO 가입 이후이며, 중국은 2006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보험업-은행업-증권업 순으로 금융업 개방을 확대함.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외국계은행에 내국민대우 부여 △중국 개인에 대한 위안화 소매금융 영업 허용 △지점 설립 지역 제한 완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였음.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을 계기로 중국 금융 개혁·개방이 또 한 번의 전환 및 상승기를 맞이함.<sup>2)</sup>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관세 우대,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투자 편리화라는 기존 보세구의 역할 이외에도 정부 직능 전환,<sup>3)</sup> 서비스업 개방 확대, 금융 개방·혁신 등을 통한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탐색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sup>4)</sup>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경제발전 모델 실험을 거친 후 그 성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텐진, 광둥, 푸젠 등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적용되며, 전국에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sup>5)</sup>
  -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도입된 후 2015년에는 텐진, 광둥, 푸젠의 자유무역시험구에도 확대 적용됨.

■ 또한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과 「외자은행 관리 조례(外资银行管理条例)」가 2012년과 2014년 각각 개정되면서 외자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진입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총 일곱 차례 개정함으로써 외자 금융회사에 대한 자격요건, 업무 범위, 영업실적 조건 등을 완화하였음.

1) 본고에서 다루는 '외자 금융기업 투자'는 은행, 증권 등 금융서비스업 분야 외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FDI)를 의미하고, '외자 금융기업 투자 제도'는 중국이 외자 금융기업 투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규와 관행 등을 포함한 제도를 지칭함.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푸둥신구 소재 4개 보세구(와이가오차오보 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단지, 양산 보세항구, 푸둥 공항종합보세구)에서 시작하여 2014년 12월 루자쥬이 금융지구, 진차오 개발지구, 장장 하이테크지구로 확대됨.

3) '정부 직능 전환'이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행정 권한과 책임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직능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리체제를 혁신함으로써 시장화된 정부를 추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의미함.

4) 国务院(2013. 9. 18), 「国务院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5) 国务院(2014. 12. 21), 「国务院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 중국 당국이 금융서비스업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진입 제한 완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무원이 2017년 1월 발표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의 적극 이용에 관한 조치(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에서는 외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업, 특히 은행, 증권 등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진입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또한 국무원은 2017년 8월 16일 발표한 「외자 증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통지」<sup>6)</sup>를 통해 다시 한 번 외자진입 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 등 관련 부처가 은행, 증권, 보험 분야 대외개방의 명확한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함.

■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 변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① 외자은행 관리 조례,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 ②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개정 ③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라는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함.<sup>7)</sup>

- 먼저 외자 금융기업의 대중국 투자 절차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금융개혁시험구를 통한 금융 개방 실험(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심) 내용을 통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가늠해봄.
- 또한 한국의 대중국 금융투자 규모, 기진출 금융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변화하는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금융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

### 글상자 1. 금융개방도 지수로 보는 중국의 금융 개방 수준

■ Chinn-Ito 금융개방도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1984년 이후로 매년 0.17을 기록하여('87~'92년 제외) 금융개방도가 아직 낮은 편에 속함.<sup>8)</sup>

- Chinn-Ito 금융개방도 지수는 AREAER<sup>9)</sup>의 4가지 항목(복수환율 존재 여부, 경상거래 제약 여부, 자본거래 제약 여부, 수출 수익금 일부의 공출 의무)을 토대로 작성한 금융개방도 지수이며, 182개 국가에 대해 1970~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음.<sup>10)</sup>
- 동 지수는 경상/자본 거래에 대한 정부 통제 유무만을 파악할 뿐 그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일례로 2015년 중국의 경우를 보면 금융업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 통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정부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 약화 혹은 강화되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음.

6) 国务院(2017. 8. 16), 「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

7) 해외직접투자(FDI)는 그린필드 투자(현지법인 신규 설립), 합작법인 설립(Joint Venture), 인수합병(기존 현지기업 M&A) 등으로 구성되며,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외자 독자 및 중외 합자 법인 설립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룸.

8) Menzie D. Chinn and Hiro Ito(2008).

9) IMF가 매년 발간하는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의 약칭임. 금융개방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기존연구에 따르면 금융개방의 척도는 주로 AREAER에 의거하며, AREAER에서는 회원국의 환율제도, 경상거래 제약 여부, 자본거래 통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상/자본 거래 통제 현황을 파악함. 그러나 경상/자본 거래 통제 여부를 파악할 뿐 그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표 1. 주요국의 Chinn-Ito 금융개방도 지수

|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United States    | Measure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
|                  | Index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United Kingdom   | Measure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                  | Index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Japan            | Measure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12  | 2.12  | 2.12  | 2.12  | 2.12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                  | Index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0.94  | 0.94  | 0.94  | 0.94  | 0.94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Hong Kong, China | Measure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                  | Index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Korea, Rep.      | Measure | -1.19 | -1.19 | -1.19 | -1.19 | -0.13 | -0.13 | -0.13 | -0.13 | -0.13 | -0.13 | -0.13 | -0.13 | -1.19 | -1.19 | -1.19 | -1.19 | -0.13 | -0.13 | -0.13 | -0.13 | -0.13 | -0.13 | -0.13 | -0.13 | 0.13  | 0.39  | 0.64  | 0.90  | 1.16  | 1.16  | 1.16  | 1.16  |
|                  | Index   | 0.17  | 0.17  | 0.17  | 0.17  | 0.41  | 0.41  | 0.41  | 0.41  | 0.41  | 0.41  | 0.41  | 0.41  | 0.17  | 0.17  | 0.17  | 0.17  | 0.41  | 0.41  | 0.41  | 0.41  | 0.41  | 0.41  | 0.41  | 0.41  | 0.47  | 0.54  | 0.60  | 0.66  | 0.72  | 0.72  | 0.72  | 0.72  |
| China            | Measure | -1.19 | -1.19 | -1.19 | -1.90 | -1.90 | -1.90 | -1.90 | -1.90 | -1.90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                  | Index   | 0.17  | 0.17  | 0.17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 India            | Measure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                  | Index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0.17  |

주: Index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금융개방도가 높음.

자료: [http://web.pdx.edu/~ito/Chinn-Ito\\_website.htm](http://web.pdx.edu/~ito/Chinn-Ito_website.htm).

■ 반면 중국 경제학자인 네레이(Nie Lei)와 쓰귀타오(Shigui Tao)가 제안한 중국 금융자유화지수인 CFLI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자유화 수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향상되어왔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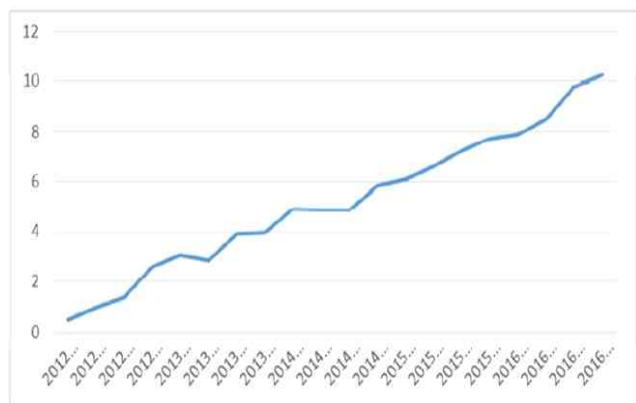
- CFLI는 중국의 금융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자유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유화에 유리한 사건이나 정책이 발생한 경우 점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계산함.<sup>12)</sup>
- 이에 따르면 CFLI 측정변수 중 하나인 금융개방도(Openness)는 2012년 1에서 시작하여 2016년 1/4분기에는 12까지 제고됨.

표 2. CFLI 각 평가항목 변화 추이

|        | 금리 | 신용 | 진입  | 건전성 | 자산  | 증권  | 개방도  |
|--------|----|----|-----|-----|-----|-----|------|
| 2012q1 | 0  | 0  | 2   | 0   | 0   | 0   | 1    |
| 2012q2 | 1  | 2  | 0   | 2   | 1   | 0   | 1    |
| 2012q3 | 1  | 0  | 4   | 0   | 1   | 2   | 1.5  |
| 2012q4 | 1  | 1  | 4   | 3   | 1   | 2   | 6.5  |
| 2013q1 | 1  | 3  | 4   | 3   | 1   | 2   | 8    |
| 2013q2 | 0  | 0  | 4   | 5   | 1   | 2   | 8.5  |
| 2013q3 | 4  | 3  | 4   | 5   | 0   | 2   | 8    |
| 2013q4 | 4  | 4  | 5   | 5   | 0   | 2   | 8    |
| 2014q1 | 4  | 3  | 5   | 6   | 2   | 3   | 12   |
| 2014q2 | 2  | 3  | 5   | 6   | 2   | 3   | 14   |
| 2014q3 | 0  | 5  | 5   | 6   | 2   | 3   | 14   |
| 2014q4 | 6  | 5  | 6   | 6   | 2   | 3.5 | 13   |
| 2015q1 | 6  | 4  | 6   | 6   | 4   | 6   | 11   |
| 2015q2 | 7  | 4  | 6   | 6   | 4   | 8   | 11.5 |
| 2015q3 | 8  | 4  | 6.5 | 8   | 5   | 8   | 11.5 |
| 2015q4 | 8  | 6  | 7   | 8   | 5.5 | 8   | 12   |
| 2016q1 | 8  | 6  | 7   | 8   | 5.5 | 9   | 12   |

자료: Nie Lei and Shigui Tao(2017).

그림 1. CFLI 변화 추이



자료: Nie Lei and Shigui Tao(2017).

■ 본고는 경상/자본 거래에 대한 정부 통제의 유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중국 금융개방도의 변화 동향을 외자 금융기업 투자에 적용되는 중국 법·규정 및 제도 변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함.

10) [http://web.pdx.edu/~ito/Chinn-Ito\\_website.htm](http://web.pdx.edu/~ito/Chinn-Ito_website.htm).

11) Nie Lei and Shigui Tao(2017).

12) 금융자유화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general) 사건이 발생한 경우 0.5점, 중대한(major) 사건이나 일반적 정책 및 규정이 발생한 경우 1점, 중대한 정책 및 규정이 시행된 경우 1.5점을 추가함.

## 2.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 관련 제도 및 규정

### 가. 외자 금융기업의 대중국 투자 절차

■ [은행]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조건이었던 은행업 대외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외자은행 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자 은행의 중국 진출에 대한 제도를 마련<sup>13)</sup>

- [진입 절차] 중국 내 외자은행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계획 신청’과 ‘영업 신청’으로 나뉘며, 은감회는 설립계획 신청서류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고(3개월 연장 가능), 영업신청 서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함(그림 2 참고).
  - 이는 설립계획을 제출한 외국기업이 실제 중국에서 은행 영업 승인을 받기까지 행정절차에 최장 11개월도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영업허가증의 실효기간은 발급 후 1년 이내임.
- [제출 서류] 외자은행은 중국 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립 신청 시 외자은행 관리 조례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업은행법에 따라 내자은행의 설립에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부록 3 참고).

■ [증권] 중국 내 외자 증권회사의 중국 진출은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에 따르며, 진출 방법은 합자증권사 설립(지분인수 포함),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자격 취득,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으로 구분<sup>14)</sup>

- [진입 절차] 중국 내 외자 증권사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 신청’, ‘영업 신청’ 및 ‘증권업 인가 신청’으로 나뉘며, 설립 신청 시 증감회는 신청서류 접수 후 45 영업일 이내에 인가결정을 서면 통지하며,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허가증 교부를, 증권업 인가 신청서류 접수 후 15 영업일 이내에 증권업 인가 결정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해야 함(그림 3 참고).
- [제출 서류] 외자 증권사의 경우에도 내자 증권사에 비해 설립 시 요구되는 서류가 더 많음(부록 3 참고).

표 3. 은행 및 증권 분야 법규 체계도<sup>15)</sup>

| 구분                      | 은행업                                                         | 증권업                                                           |
|-------------------------|-------------------------------------------------------------|---------------------------------------------------------------|
| 관리·감독 기관 <sup>16)</sup>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br>(CBRC: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br>(CSRC: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

표 3. 계속

13) 중국은 2006년 12월 WTO 가입 이행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금융업 부문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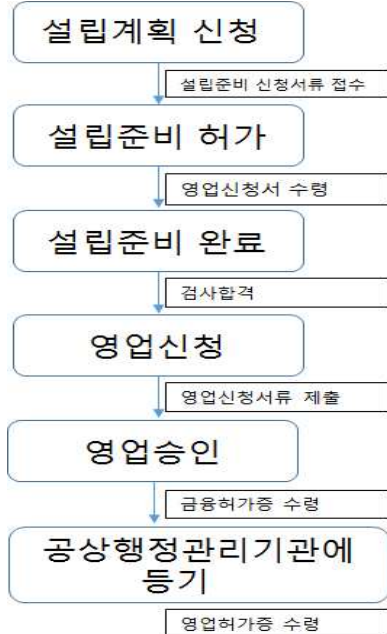
14)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2016), p. 85.

15) 중국 금융법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령 법률, 국무원령 행정법규 및 금융감독기관(은감회/증감회)령 각종 규칙으로 구성됨. 중국에서는 헌법, 법률, 국무원의 조례, 각 금융감독기관의 부문규장 등의 순으로 효력이 있음.

| 구분                           | 은행업                                            |                                             | 증권업                                                      |                                                           |
|------------------------------|------------------------------------------------|---------------------------------------------|----------------------------------------------------------|-----------------------------------------------------------|
| 법<br>(전국인민<br>대표대회<br>상무위원회) | 상업은행법<br>제정: 1995.5.10<br>개정: 2015.8.29        | 은행감독관리법<br>제정: 2003.12.27<br>개정: 2006.10.31 | 증권법<br>제정: 1998.12.29<br>개정: 2005.10.27                  |                                                           |
| 행정법규<br>(국무원령)               | 외자은행 관리 조례<br>제정: 2006.11.8/개정: 2014.11.27     |                                             | 증권회사 감독 관리 조례<br>제정: 2008.4.23/ 개정: 2014.7.29            |                                                           |
| 규칙<br>(은감회령)                 | 외자은행 관리 조례 실시세칙<br>제정: 2006.11.17/개정: 2015.7.1 |                                             | 외자 증권사<br>설립 규칙<br>제정:<br>2002.6.1,<br>개정:<br>2012.10.11 | 적격 외국인<br>기관투자자<br>경내<br>증권투자<br>관리방법<br>제정:<br>2006.8.24 |
|                              |                                                |                                             | 외국 증권<br>사무소<br>관리방법<br>제정:<br>1999.4.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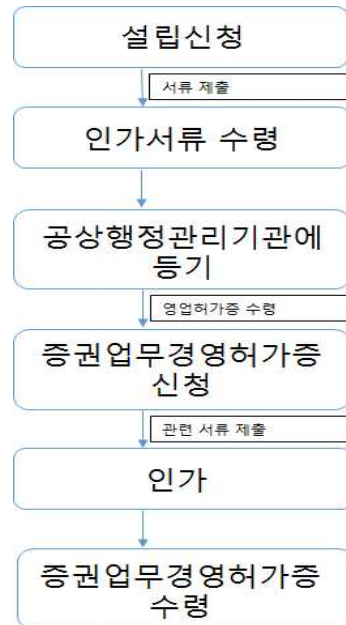
자료: 중국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2016. 12).<sup>17)</sup>

그림 2. 중국 내 외자은행 설립 절차



자료: 외자은행 관리 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중국 내 외자 증권사 설립 절차



자료: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중국의 금융업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이 포함되며, 각각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상 모두 국무원 산하)가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여기에 금융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은행까지 포함하면, 1行 3會가 중국의 금융감독 담당기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17)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 앞의 책, p. 55, p. 84.



## 나.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 규제 현황

■ 외자 은행 및 증권사는 중국시장 진입 전 ‘설립’ 단계와 진입 후 ‘영업’ 단계에서 회사 유형, 출자비율, 업무 범위 등에 외자진입 제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음.

- [회사 유형] 외국은행 지점, 외국 독자은행, 중외 합자은행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 단일 또는 주요 주주는 반드시 국외 상업은행이어야 하며, 비주요 주주는 국외 금융기관이어야 함. 또한 농촌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은행류 금융기관에만 허용
- [출자비율] 외국인이 중국자본 은행에 단독 출자하는 경우 지분율은 20% 이하, 공동 출자의 경우 외자지분을 합계 25% 이하까지만 허용. 증권사는 중국 측 지배주주 조건
- [업무 범위] 증권사 설립 시 위안화 보통주, 외자주 및 정부채·회사채의 위탁판매와 보증, 외자주의 중개, 정부채 및 회사채의 중개와 자기경영만 허용. 설립 후 만 2년 경과 시 조건을 갖춘 경우 업무 범위 확대 신청 가능

■ 반면 외자은행 관리 조례,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 등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외자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음(표 2 참고).<sup>18)</sup>

- 외자 독자은행 및 중외 합자은행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본점이 1억 위안 이상을 해당 지점의 운영자금으로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정에 따라 ‘1억 위안’이라는 최저 기준이 삭제되었음.
- 외자 독자은행 설립 시 신청 2년 전 중국 내 사무소 기설립, 중외 합자은행 설립 시 신청 전 사무소 기설립 조건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에 따라 동 조건은 삭제되었음.
- 외자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신청 전 중국 내 영업기간이 3년 이상, 신청 전 2년간 연속 흑자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개정에 따라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단축되었고 흑자 조건은 삭제되었음.
-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 주주 출자비율은 33% 이하에서 49%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증권업 종사 자격을 갖춘 인력 보유 요건이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축소되었음.

■ 또한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sup>19)</sup>도 1995년 처음 발표된 이후 총 7차례 개정<sup>20)</sup>을 거치면서 출자비율 상향 조정,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등 금융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였음(표 4 참고).

- 증권업에 대한 외자비율은 2002~11년까지는 33% 이하로 제한되었던 데 반해, 2012~17년까지는 49% 이하로 규정하여 출자비율을 대폭 상향
  - 반면 은행업의 경우 외국인 단일주주 20% 이하, 공동주주인 경우 외자 합계 25% 이하의 출자비율로 규정된 외자은행에 대한 진입 조건을 유지함.

18) 외자은행 관리 조례는 2014년,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은 2012년에 개정되었음.

19)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으로, 2015년까지는 업종을 크게 권장목록, 제한목록, 금지목록으로 분류하였으나 2017년부터 장려목록과 네거티브리스트로 구분하고, 제한목록과 금지목록을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시킴.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간단한 신고만 거치면 외국인투자 가능.

20)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개정을 거듭할수록 업종 구분 및 제한조건이 구체화·세분화되는 특징이 있음.
  -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정책의 명확성을 더하고, 업종 전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아닌 업종 일부에 대한 제한·금지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추세인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6월 28일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7차 개정판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금융 서비스업은 네거티브리스트 중 제한목록에 포함됨.
  - 이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축적한 네거티브리스트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4.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개정 연도별 중국 금융시장 개방 관련 제한조치 내용<sup>21)</sup>

| 연도           | 세부업종         | 조치 내용                                                                                                                                                                                     | 개선사항                                                                 |
|--------------|--------------|-------------------------------------------------------------------------------------------------------------------------------------------------------------------------------------------|----------------------------------------------------------------------|
| 2002<br>2004 | 증권           | 2004년 12월 11일부 외국인투자 허용, 단 외자비율 33% 이하 조건                                                                                                                                                 | - 증권업 외자 제한 조건의 구체적 명시                                               |
|              | 증권투자<br>기금관리 | 외국인투자 허용, 단 외자비율 33% 이하 조건<br>2004년 12월 11일부로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 관련 WTO 양허조건 명시<br>- 투자은행, 상업은행, 금융 자문회사를 제한목록에서 삭제                 |
| 2007<br>2011 | 증권           | A주 위탁판매, B주 및 H주, 정부 및 회사채 위탁판매 및 거래만 허용. 단 외자비율 33% 이하 조건                                                                                                                                | - 증권업 업무 범위 확대<br>- (참고) '07년부터 선물이 금지항목에서 제한항목으로 이동(단 중국 측 지배주주 조건) |
|              | 증권투자<br>기금관리 |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
| 2015         | 은행           | 외국인이 중국자본 은행에 단독 출자하는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동 출자는 지분율 합계 25% 이하. 농촌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은행류 금융기관에만 허용                                                                                                 | - 은행업 외자 제한 조건의 구체적 명시<br>- 증권업 외자비율 33→49%로 확대                      |
|              | 증권           | 설립 시 위안화보통주, 외자주 및 정부채, 회사채의 위탁판매와 보증, 외자주의 중개, 정부채 및 회사채의 중개와 자기경영만 허용. 설립 후 만 2년 경과 시 업무 범위 확대 신청 가능. 외자비율 49%까지 허용                                                                     |                                                                      |
|              | 증권투자<br>기금관리 |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
| 2017         | 은행           | 외국인이 중국자본 은행에 단독 출자하는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동 출자는 지분율 합계 25% 이하. 농촌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은행류 금융기관에만 허용. 외국은행 지점, 외국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 단일 또는 주요 주주는 반드시 국외 상업은행이어야 하며, 비주요주주는 국외 금융기관이면 투자 가능함. | - 네거티브리스트 도입<br>- 은행업 진출 가능 외자기업 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                     |
|              | 증권           | 설립 시 위안화보통주, 외자주 및 정부채, 회사채의 위탁판매와 보증, 외자주의 중개, 정부채 및 회사채의 중개와 자기경영만 허용. 설립 후 만 2년 경과 시 조건을 갖춘 경우 업무 범위 확대 신청 가능. 중국 측 지배주주 조건                                                            |                                                                      |
|              | 증권투자<br>기금관리 | 중국 측 지배주주 조건 적용                                                                                                                                                                           |                                                                      |

자료: 해당 연도별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 이 표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금융서비스업 각 세부업종에 대한 제한조건이 제시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다루며(표 3의 구분 참고), 은행 및 증권업 관련 내용만 포함함.

## 다. 중국 금융개혁시범구를 통한 금융 개방 사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 중국 당국은 2017년 6월 28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를 별도로 발표함으로써 금융서비스업 개방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 문건은 크게 ‘시장진입 제한’과 ‘내국민대우 제한’으로 구분되는 10개의 규제 유형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자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이해도와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조치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여러 법·규정에 산재해 있는 금융서비스업 관련 규제 내용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함(표 5 참고).
- 법·규정 적용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금융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내·외자 금융기관의 현지 영업을 위한 양호한 금융환경 조성 등의 실험 조치가 실행되고 있음.

- 2013, 2014년에는 상하이시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를, 2015년과 2017년에는 국무원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sup>22)</sup>를 발표하였으며, 개정을 거듭할수록 외자진입 제한이 완화되어왔음(부록 2 참고).
- 2015년부터 상하이시 정부가 아닌 ‘국무원’이 위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것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이 텐진, 광둥, 푸젠 등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확대 적용됨을 의미함.
- 2017년 6월 16일 발표된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2017년 판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이 ‘정부채의 대리발행, 대리상환 및 인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영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2015년 판에 비해 외자에 대한 개방 수준이 확대됨.
-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CEPA<sup>23)</sup> 합의사항에 준하는 높은 대외개방 수준을 허용한 금융서비스업 분야도 있음.
- 예컨대 증권투자자문업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자 증권회사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합자 증권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 제7조에 명시된 ‘외자증권사의 외국인주주’ 자격 요건을 지칭함.<sup>24)</sup>
- 특히 중국정부가 승인한 ‘금융개혁시험구’ 내에 중외 합자 증권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자비율 50% 이상을 허용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은행 및 증권 분야에 대해 허용한 최고 수준의 외자 출자비율임.

22) 이 네거티브리스트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뿐만 아니라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적용됨.

23) 중국-홍콩 경제진밀화 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은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24) 외자증권사의 외국인주주 요건은 ① 외국인주주의 소재국이 진전한 증권법률과 감독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기관과 증권감독협력 MOU를 체결하여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② 투자자들의 소재지에는 투자에 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적어도 투자자 중 하나는 금융업에 대한 법적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고, 지분참여 3년 이내에는 소유하고 있는 합자증권회사의 외국인 지분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음 ③ 소재국에서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증권감독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지표가 소재 국가 또는 지역 법률 기준이나 감독당국의 요구에 부합할 것 ⑤ 완비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 ⑥ 완비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 ⑦ 신용도와 경영실적이 양호할 것 ⑧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건전성 요건에 부합할 것임.

-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 개혁개방 실험에는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 금융시장 금리 시장화, 위안화 국제화, 금융기관 자산가격 결정의 시장화, 외환관리 시스템 개혁, 초국경 용자 자유화 및 편리화 등 양호한 금융투자 환경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됨.<sup>25)</sup>
- 가장 대표적인 금융 서비스 개방 사례로 자유무역계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역외계좌로 이 계좌가 있으면 역외에서도 위안화와 외화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편리하며, 시험구에 진출한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업무 지원에도 도움이 됨.<sup>26)</sup>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을 꾸준히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 센터로 도약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sup>27)</sup>하였으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여전히 상존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자기업 진출 시 네거티브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사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나,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분야가 많아 등록제로의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또한 출자회사의 형태, 자산규모, 출자한도 제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향후 지속적인 외자진입 철폐가 필요

표 5.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내용 정리- 은행 및 증권 관련

|                            |      | 유형   | 세부업종 | 조치 내용                                                                                                                                                                | 법적 근거                |
|----------------------------|------|------|------|----------------------------------------------------------------------------------------------------------------------------------------------------------------------|----------------------|
| 시<br>장<br>진<br>입<br>제<br>한 | 1    | 회사유형 | 은행   | * 외국인 독자은행 주주, 중외합자은행 외국인주주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외국인 단일 또는 지배/주요 주주는 상업은행이어야 함.                                                                                              | 외자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
|                            | 2    | 자산규모 | 은행   | * 외자법인은행 외국인 단일 또는 지배/주요 주주,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은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br>- 단일 또는 지배/주요 주주: 신청 1년 전 연말 기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                                                         | 외자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
|                            |      |      |      | * 중국자본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협동조합, 촌진은행 등 중국자본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자는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br>- 중국자본 상업은행: 최근 1년 연말 기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br>- 중국자본 도시 또는 농촌 신용사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 | 경외금융기구투자출자증자금융기구관리방법 |
|                            |      |      |      | 중국자본 상업은행의 해외투자자는 최근 2년간 은감회가 인정하는 '양호' 장기신용등급 보유, 최근 2년 회계연도 흑자 및 일정한 자본충족을 요건 <sup>28)</sup> 을 충족해야 함.                                                             | 증자상업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
|                            | 4    | 자본금  | -    | 자본금 요건은 보험회사 및 기금회사에만 적용                                                                                                                                             | -                    |
| 5                          | 출자비율 |      | 은행   | * 단일투자자의 경우 외자지분비율 20%, 공동투자자의 경우 합계 25% 이하                                                                                                                          | 증자상업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
|                            |      |      | 증권   | * [설립] 증권사는 제한목록에 속하며,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판,  |

25) 国务院(2013. 9. 18), 「国务院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26)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2015), pp. 129~130.

27) 中国人民银行, 商务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上海市人民政府(2015. 10. 29), 「进一步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

|                                     |    |              |            |                                                                                                                                                                          |                                                                        |
|-------------------------------------|----|--------------|------------|--------------------------------------------------------------------------------------------------------------------------------------------------------------------------|------------------------------------------------------------------------|
| 내<br>국<br>민<br>대<br>우<br><br>제<br>한 |    |              | 증권투자<br>자문 | * [지분투자] 단일출자의 경우 외자비율 20%, 공동출자의 경우 합계 25% 이하                                                                                                                           | 외자증권사설립규칙,<br>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2017년 판                                  |
|                                     |    |              |            | * 일정 자격을 갖춘 외자 증권회사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내 합자증권투자자문회사 설립 허용<br>* 외자비율은 49% 이하로 하되, 중국정부가 승인한 금융개혁시험구 내에서는 외자비율 50% 이상도 허용                                                         | CEPA 본문·부록·보충협정,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 개방혁신거점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 방안에 관한 통지 |
|                                     | 6  | 지점설립<br>및 운영 | 은행         | * 외국은행 지점을 설립하려면 신청인은 해당 지점에 2억 위안 혹은 등가의 자유태환화폐를 운영자금으로 무상 제공해야 함.                                                                                                      |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br>실시방법                                                    |
|                                     | 7  | 기타           | -          | 기타 금융기관 진입 제한은 금융정보 서비스, 신용조사 및 평가 서비스에만 적용                                                                                                                              | -                                                                      |
|                                     | 8  | 업무범위         | 은행         | * 외국은행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이 허가하는 '대리수불 항목', '은행카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당 100만 위안 이상의 정기예금 업무 이외에는 중국 공민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업무 종사 불가                                                 | 외자은행 관리조례,<br>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2017년 판                                  |
|                                     | 9  | 운영지표         | 은행         | * 외국은행 지점 운영자금, 준비금 등 항목 합계 중 위안화 금액 및 위안화 리스크 자산의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함.<br>* 외국은행 지점은 자산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동성자산 및 부채의 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br>* 외국은행 지점 국내 외화자산은 국내 외화부채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외자은행관리조례                                                               |
|                                     | 10 | 거래소<br>자격    | 증권         | * 증권거래소의 보통회원이 될 수 없음.<br>* 중국정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A주 증권계정 개설 신청 불가                                                                                                         |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2017년 판,<br>상하이·홍콩 주식시장 거래 상호연동 기제 시험지역에 관한 약간의 의견     |

자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한국의 대중국 금융 직접투자 현황

#### 가. 한국의 대중국 진출 금융기업 현황

-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1993년과 1998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를 꾸준히 설립하였으나, 설립지역이 일부 대도시 편중되어 있음.

28)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은 그 등록지 은행업 자본충족율 평균수준을 지키되 10.5% 이상이어야 함.



- [은행] 2017년 3월 현재 한국의 대중국 기진출 은행은 10개이며, 그중 현지법인으로 진출한 은행이 5개, 지점 형태 진출이 3개, 사무소 형태 진출이 2개임.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현지법인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이 지점 형태, 수출입은행, 농협이 사무소 형태로 각각 진출하였음.
  - 가장 일찍 중국에 진출한 은행은 1993년 베이징에 진출한 수출입은행(사무소)이며, 현지법인 형태로 가장 빨리 진출한 은행은 2007년 베이징에 설립된 우리은행(11월)과 KEB하나은행(12월)임.
- [증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증권분야 기업은 34개이며, 그중 증권사가 18개, 자산운용사가 10개임.
  - 중국에 가장 일찍 진출한 한국 증권분야 기업은 현대증권 상하이 사무소(1998년)이며, 현지법인 형태로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2004년 상하이에 설립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증권사의 경우 2008년 상하이에 설립된 한화(상해)투자자문유한공사임.
- 우리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칭다오, 선양, 청두,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중국 진출 국내은행들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한국인 고객 및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함.

표 6. 한국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은행

| No. | 회사명   | 해외 점포명       | 진출 형태 | 진출 도시 | 개설일자       |
|-----|-------|--------------|-------|-------|------------|
| 1   | 수출입   | 북경           | 사무소   | 베이징   | 1993-02-01 |
| 2   | 산업    | 상해           | 지점    | 상하이   | 1996-04-26 |
| 3   | 수출입   | 상해           | 사무소   | 상하이   | 2004-06-22 |
| 4   | 산업    | 광주           | 지점    | 광저우   | 2005-07-01 |
| 5   | 우리    | 중국우리은행       | 현지법인  | 베이징   | 2007-11-12 |
| 6   | KEB하나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현지법인  | 베이징   | 2007-12-24 |
| 7   | 신한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현지법인  | 베이징   | 2008-04-30 |
| 8   | 산업    | 베이징지점        | 지점    | 베이징   | 2008-07-01 |
| 9   | 기업    |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 현지법인  | 톈진    | 2009-06-22 |
| 10  | 국민    |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2-11-19 |
| 11  | 부산    | 청도           | 지점    | 칭다오   | 2012-12-06 |
| 12  | 대구    | 상해           | 지점    | 상하이   | 2012-12-17 |
| 13  | 산업    | 선양           | 지점    | 선양    | 2013-04-08 |
| 14  | 농협    | 북경           | 사무소   | 베이징   | 2013-09-12 |
| 15  | 산업    | 산업은행 중국 청도지점 | 지점    | 칭다오   | 2015-11-16 |

주: 2017년 3월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 웹사이트(www.fnhubkorea.kr).

표 7. 한국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 증권

| No. | 세부 업종             | 회사명       | 해외 점포명                                                                     | 진출 형태 | 진출 도시 | 개설일자       |
|-----|-------------------|-----------|----------------------------------------------------------------------------|-------|-------|------------|
| 1   | 증권                | 현대증권      | 상해                                                                         | 사무소   | 상하이   | 1998-10-30 |
| 2   | 증권                | NH투자증권    | 상해                                                                         | 사무소   | 상하이   | 2003-03-07 |
| 3   | 자산운용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에셋플러스(상해)투자자문<br>유한공사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4-11-22 |
| 4   | 자산운용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상해에셋플러스유한공사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5-01-10 |
| 5   | 여전 <sup>29)</sup> | 효성캐피탈     | 현대용자조임유한공사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7-04-25 |
| 6   | 증권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증권(북경사무소)                                                              | 사무소   | 베이징   | 2007-07-27 |
| 7   | 여전                | 비씨카드      | 비씨카드 상해법인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8-03-14 |
| 8   | 자산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  | 상해                                                                         | 사무소   | 상하이   | 2008-04-16 |
| 9   | 증권                | 한화투자증권    | 한화(상해)투자자문<br>유한공사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8-06-01 |
| 10  | 증권                | 신한금융투자    | 상해                                                                         | 사무소   | 상하이   | 2008-07-04 |
| 11  | 증권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증권(상해)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8-08-22 |
| 12  | 증권                | 동부증권      | 화기투자자문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9-01-19 |
| 13  | 증권                | SK증권      | 상해                                                                         | 사무소   | 상하이   | 2009-02-26 |
| 14  | 자산운용              | 로버스트투자자문  | Robust Investment<br>Advisory Company                                      | 현지법인  | 상하이   | 2009-09-17 |
| 15  | 증권                | 한국투자증권    | 진우투자자문유한공사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0-11-12 |
| 16  | 증권                | 미래에셋대우증권  | 상해                                                                         | 사무소   | 상하이   | 2010-12-08 |
| 17  | 증권                | KTB투자증권   | KTB Investment<br>Management Co.LTD                                        | 현지법인  | 청두    | 2010-12-09 |
| 18  | 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 상해사무소                                                               | 사무소   | 상하이   | 2010-12-29 |
| 19  | 자산운용              | 한국투자신탁운용  | Korea Investment<br>Management Co.Ltd<br>Shanghai<br>Representative Office | 사무소   | 상하이   | 2011-01-12 |
| 20  | 증권                | NH투자증권    | Woori Asia<br>Investment Advisory<br>Co., Ltd.(Beijing)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1-01-24 |
| 21  | 증권                | 아이엠투자증권   | 카비로스투자자문유한공사                                                               | 현지법인  | 상하이   | 2011-05-16 |
| 22  | 증권                | 하나금융투자    | 하나대투증권 북경대표처                                                               | 사무소   | 베이징   | 2011-06-24 |
| 23  | 여전                | 롯데캐피탈     | 낙천용자조임유한공사                                                                 | 현지법인  | 상하이   | 2011-07-08 |
| 24  | 증권                | 미래에셋대우증권  | 한우성해투자자문(유)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1-09-20 |
| 25  | 증권                | 하나금융투자    | 하나세계(북경)투자자문유<br>한공사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1-10-14 |
| 26  | 여전                | 현대캐피탈     | Beijing Hyundai Auto<br>Finance Co.Ltd.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2-03-08 |
| 27  | 증권                | 삼성증권      | 베이징                                                                        | 사무소   | 베이징   | 2013-11-18 |
| 28  | 여전                | 롯데카드      | LOTTE MEMBERS<br>CHINA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4-02-20 |
| 29  | 증권                | 키움증권      | 대련나미빌딩주차장관리<br>유한공사                                                        | 현지법인  | 다롄    | 2015-04-22 |
| 30  | 자산운용              | 한화자산운용    | 한화투자관리유한공사                                                                 | 현지법인  | 톈진    | 2016-10-21 |
| 31  | 자산운용              | 삼성자산운용    | 삼성자문(북경)유한공사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6-10-31 |
| 32  | 자산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익재투자관리(상해)유<br>한공사                                                       | 현지법인  | 상하이   | 2016-12-05 |
| 33  | 자산운용              | KEB하나     | 북경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 현지법인  | 베이징   | 2017-03-06 |
| 34  | 여전                | NH농협캐피탈   | 공소그룹(천진)국제용자조<br>임유한공사                                                     | 현지법인  | 톈진    | 2017-03-22 |

주: 2017년 3월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웹사이트(www.fnhubkorea.kr).

## 나. 기진출 금융기업의 애로사항

■ 본 절에서는 기존 문헌<sup>30)</sup> 및 중국 내 한국 금융사 면담을 통하여 기진출 금융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법·규정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사함.

■ [까다로운 설립 및 영업 조건] 중국 내자 은행·증권사 설립 요건에 비해 외자 은행·증권사에 요구하는 요건이 더 까다로움.

- 외자 독자은행 및 중외 합자은행을 설립하려는 외국은행에는 지속적인 흑자능력,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 경험 보유, 유효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보유 등 내자 은행에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sup>31)</sup>
  - 또한 외국은행 소재국가 또는 지역이 완비된 금융감독관리제도를 구비하고, 해당 금융감독당국은 중국 은감회와 양호한 감독관리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외자 독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려는 경우 외국 단일 주주 또는 주요 주주는 설립 신청 전년도 말 현재의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sup>32)</sup>
- 또한 설립 후 영업에 있어서도 위안화 업무 수행 자격요건을 따로 두는 등 업무범위에 제한이 여전히 존재함.<sup>33)</sup>
  -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신청 전 중국 내에서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외자은행에 대해 대출 총액 한도제, 예금 편리도 규제, 예대비율 규제 등을 적용하여<sup>34)</sup> 자본과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계를 지닌 외자 은행들의 중국 사업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sup>35)</sup>
- 한편 중국 내 외자증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 및 내국인 주주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함.<sup>36)</sup>
  - \* 예컨대 외국 증권사의 외국인주주는 소재국에서 증권업 경영 5년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증권감독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정보공개의 투명성 부족] 중국 진출 한국 금융기관은 중국 금융시장 내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현지에서 투자 및 영업 확대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정부는 MSCI 지수 편입 등을 위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여전히 공시 내용의 모호성, 제공 정보의 불충분 등 투명성 관련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한국의 DART<sup>37)</sup>와 같이 일원화된 정보조회 통로가 부족하여

29)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포함됨(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0) ① 이현태 외(출간 예정) ② 금융투자협회·중국자본시장연구회(2014). ②번 자료의 경우 2014년 발간자료이나 그 내용이 현재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용하였음.

31) 「외자은행관리조례」 제9조(검색일: 2017. 7. 25).

32) 「외자은행관리조례」 제10조(검색일: 2017. 7. 25).

33) 「외자은행관리조례」 제34조(검색일: 2017. 7. 25).

34) 대출총액한도제: 전년 말 대비 대출총액 증가를 규제.

예금편리도규제: 전월 평균 예금액과 비교하여 3% 이상의 예금총액 변동을 제한.

예대비율 규제: 운영자금의 해외 조달 한도를 제한하고 예금 자산의 75%를 넘을 수 없음.

35) 이현태 외(출간 예정).

36) 「외자증권사설립규칙」 제7조(검색일: 2017. 7. 25).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효율성이 떨어짐.<sup>38)</sup>

- 또한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치는 회계기준, 은행 자산분류(5급 분류)의 부정확성,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지표를 맞추려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노력에서 파생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묵인과 방조 등 글로벌 기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많은 불합리와 임의성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임.<sup>39)</sup>
- 은감회는 외자은행 영업조직의 업무 범위와 건전성 감독상 필요에 의해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최저액을 증액할 수 있고 그 위안화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중국 은행업 진출을 원하는 외국은행들에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sup>40)</sup>

■ [지점 개설 및 업무 범위 제한] 은행의 경쟁력은 지점 네트워크의 증설이 가장 기본이나, 외자은행의 경우 지점 설립에 제한이 존재<sup>41)</sup>

- 중국 현지은행은 연간 설립할 수 있는 지점 수의 제한이 없는 반면, 외자은행은 은감회 내부기준 및 관례상 일종의 비명문화 규제로서 신규지점 증설 제한이 있어 네트워크 확충 및 영업 활성화에 애로가 큼.<sup>42)</sup>
- 중국 내에 영업조직을 설립한 외국은행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무소를 제외하고, 국가 지역경제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추가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비명문화된 규제에 의한 사무소 설립 제한이 있을 수 있음.<sup>43)</sup>

## 4.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은 자국의 금융시장이 미성숙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대외개방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개방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점진적인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과정에서 세부 금융영역별로 개방 속도에 차이를 보임.
- 외자비율 제한이나 남아 있는 제한조치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은행업과 증권업에서도 개방 수준에 차이가 있음.<sup>44)</sup>
  - \* 외자비율 제한: △증권업: 49%까지 허용 △은행업: 외자 단독출자의 경우 20% 이하, 공동출자의 경우 외자출자 총합 25%까지 허용
- 또한 단계적인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과정에서 자유무역시험구와 여타 지역 간에도 개방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
-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금융서비스업 분야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시장진입제한과 내국민대우 조건을 명시한

3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fss.or.kr](http://dart.fss.or.kr).

38) 중국 상하이 진출 한국 금융기업 인터뷰(2016. 9, 중국 상하이).

39) 이현태 외(출간 예정).

40) 「외자은행관리조례」 제8조(검색일: 2017. 7. 25).

41) 금융투자협회·중국자본시장연구회(2014), p. 169.

42) 위의 책, p. 169.

43) 「외자은행관리조례」 제13조(검색일: 2017. 7. 25).

44)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을 기준으로 함.

것은 글로벌 표준에 근접해가는 조치로 평가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여러 법·규정에 산재해 있는 외자진입 제한 관련 조항들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함.

■ 중국 시장진입에 있어 기존출 한국 금융기업은 여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외자진입 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바, 중국 정부당국은 향후 금융서비스업 개방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진입’ 단계에서는 진입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됨.
- ‘진입 후 영업’ 단계에서는 업무 범위, 지점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 면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애로사항은 외자진입 제한을 적극 완화하겠다고 표명해온 중국 정부당국의 입장에 배치되는바, 향후 보다 실질적인 외자 완화 조치를 통해 금융서비스업 개방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2020년까지 상하이를 글로벌 금융 센터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금융 개혁·개방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성숙한 선진 금융시장의 시스템과 경험을 받아들여 자국 금융시장을 발전시켜나가야 함.

■ 중국은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바,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업은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이나 조치의 변화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무원이 2017년 8월 발표한 「외자 증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통지」에 따르면 중국 은감회와 증감회는 각각 은행업과 증권업 대외개방의 명확한 시간표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바, 추후 관련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금융 대외개방과 관련한 법·규정의 변화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기회요인을 포착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2012년 12월 중국시장에 나란히 진출한 국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기존 위안화 영업 조건(신청 전 중국 내 3년 이상 영업, 신청 전 2년간 흑자)이 ‘신청 전 중국 내 1년 이상 영업’으로 완화되자 위안화 영업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음.

■ 한편 중국 현지에서 법인 및 지점을 운영하면서 정보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진출기업의 자체적인 극복 노력이 필요함.

- 예컨대 중국 금융시장에서 해외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sup>45)</sup>
-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현지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 금융시장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 △비즈니스 플랫폼 형성 및 이를 통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에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함.<sup>46)</sup>

45)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국 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등급은 '15년 하반기에 2등급, '16년 상반기 3'등급, '16년 하반기 2'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16년 하반기 평가등급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현지고객 비율 △현지간부직원 비율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46) 중국 상하이 진출 한국 금융기업 인터뷰(2016. 9, 중국 상하이).



- 중국에서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사례로 꼽히는 KEB하나은행의 경우 중국 현지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여타 중국 진출 한국은행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좋은 영업실적을 나타냄.<sup>47)</sup>
- 또한 한국 금융기업은 선진국 및 중국 경쟁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바, 차별화된 금융상품 설계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지에서의 경쟁우위를 키울 필요가 있음.
- 은행업은 지명도, 신뢰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먼저 중국 현지 고객이 자행(自行)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게 폭넓은 지명도를 확보해야 함.<sup>48)</sup>
- 또한 한국 금융기업은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외자은행으로서의 특색을 찾지 못하는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현지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지 고객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sup>49)</sup> **KIEP**

47) 중국 상하이 진출 한국 금융기업 인터뷰(2016. 9, 중국 상하이).

48) 이현태 외(출간 예정).

49) 이현태 외(출간 예정).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중국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2015.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태 외. 출간 예정. 『13.5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2010. 『2010년 중국자본시장연구』.
- \_\_\_\_\_. 2012. 『2012년 중국자본시장연구』.
- \_\_\_\_\_. 2013. 『2013년 중국자본시장연구』.
- \_\_\_\_\_. 2014. 『2014년 중국자본시장연구』.
- \_\_\_\_\_. 2016.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 한국증권업협회. 2008. 『중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 [영문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6.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16*.
- Chinn Menzie D. and Hiro Ito. 2007. "A New Measure of Financial Openness."
- Nie Lei, Shigui Tao. 2017. "The Construct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ndex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2017: 6(4).

### [중문자료]

- 「外资银行管理条例」(시행 2015. 1. 1, 국무원령 제657호, 일부개정). [http://www.gov.cn/zhengce/2014-12/20/content\\_2795314.htm](http://www.gov.cn/zhengce/2014-12/20/content_2795314.htm)(검색일: 2017. 7. 25).
-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시행 2012. 10. 11, 증감회령 제86호, 일부개정). [http://www.csrc.gov.cn/pub/newsite/flb/flfg/bmgf/zjgs/gsslbg/201310/t20131021\\_236602.html](http://www.csrc.gov.cn/pub/newsite/flb/flfg/bmgf/zjgs/gsslbg/201310/t20131021_236602.html)(검색일: 2017. 7. 25).
-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시행 2014. 3. 1,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8호, 일부개정).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445135](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445135)(검색일: 2017. 7. 25).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시행 2015. 10. 1,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일부개정). [http://www.gov.cn/ziliao/flfg/2005-09/12/content\\_31152.htm](http://www.gov.cn/ziliao/flfg/2005-09/12/content_31152.htm)(검색일: 2017. 7. 25).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1997.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_\_\_\_\_. 2002.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_\_\_\_\_. 2004.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_\_\_\_\_. 2007.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_\_\_\_\_. 2011.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_\_\_\_\_. 2015.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_\_\_\_\_. 2017.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国务院. 2017. 「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国务院. 2017. 「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

国务院. 2015.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通知」.

上海市政府. 2017. 「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服务业对外开放负面清单指引(2017年版)》的通知」.

国务院. 2014. 「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国务院. 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中国人民银行, 商务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上海市人民政府. 2015. 「进一步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

### [웹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웹사이트.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7. 8. 13).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웹사이트. [www.fnhubkorea.kr](http://www.fnhubkorea.kr)(검색일: 2017. 8. 13).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www.fss.or.kr](http://www.fss.or.kr)(검색일: 2017. 8. 13).

## 부록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은행, 증권)

| 연도   | 중국 자본시장 개방 주요 내용                                                                                                                                                    |
|------|---------------------------------------------------------------------------------------------------------------------------------------------------------------------|
| 2001 | ·WTO 가입(2006년 12월까지 이행 유예)                                                                                                                                          |
| 2002 |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 도입(한도 100억 USD)<br>·해외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지분 33% 보유 허용<br>·해외·중국 합작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설립 허용<br>·해외 증권회사 중국사무소에 증권거래소 특별회원 자격 부여<br>·해외 증권회사 B주식 직접거래 허용 |
| 2004 | ·‘자본시장의 개혁개방과 안정적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무원 9조 의견)’<br>·합작법인을 통한 내국인주식(A주식) 및 채권 인수·매매 참여 허용<br>·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허용                                                   |
| 2005 | ·합작법인을 통한 내국인주식(A주식) 및 채권 인수·매매 참여 허용<br>·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허용<br>·비유통주 개혁 지속(1,400여 개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br>·판다본드(Panda Bond) 발행                                       |
| 2006 | ·QDII(적격 내국인 기관투자자) 제도 도입<br>·외자합자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외국인 지분 49%로 상향 조정<br>·외국인 기관투자자 A주식 직접 거래 허용                                                                        |
| 2007 | ·외국인의 자산운용사 지분 49% 보유 허용                                                                                                                                            |
| 2011 | ·R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 시행(초기 한도 200억 RMB)                                                                                                                      |
| 2012 | ·QFII 및 RQFII 한도 상향(각 800억 USD, 2,700억 RMB로 상향)<br>·QFII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br>·자산운용사 라이선스 취득 기준 완화<br>·외자증권사 설립규칙 개정                                             |
| 2013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출범                                                                                                                                                  |
| 2014 |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                                                                                                                                                        |
| 2015 | ·외자은행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 개정<br>·외자은행관리조례 실시세칙 개정<br>·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개정                                                                                                       |
| 2017 |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도입<br>·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

자료: 중국자본시장연구 2010, 2012, 2013, 2016; 중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2008)<sup>50)</sup> 및 저자 작성.

50) 2012년 중국자본시장연구, p. 246; 2013년 중국자본시장연구, pp. 139~140;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pp. 149~150; 중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p. 20.

## 부록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개방 수준: 은행 및 증권

| 연도   | 금융업 관련 내용    |                                                                                                                                                                                                                                                                                                                                                                                                                                                                                                                                                                                                                                                                                                                                                          | 개선사항                                                                                                                     |
|------|--------------|----------------------------------------------------------------------------------------------------------------------------------------------------------------------------------------------------------------------------------------------------------------------------------------------------------------------------------------------------------------------------------------------------------------------------------------------------------------------------------------------------------------------------------------------------------------------------------------------------------------------------------------------------------------------------------------------------------------------------------------------------------|--------------------------------------------------------------------------------------------------------------------------|
| 2013 | 은행           | 제한목록에 포함                                                                                                                                                                                                                                                                                                                                                                                                                                                                                                                                                                                                                                                                                                                                                 |                                                                                                                          |
|      | 증권           | 외자비율 49%까지 허용. 설립 시 업무범위는 주식(위안화 보통주, 외자주) 및 채권(정부채, 회사채)의 위탁판매 및 보증, 외자주의 증개, 채권(정부채, 회사채)의 증개 및 자기경영만 허용. 연속 2년 이상 경영 후 유관 조건을 충족하면 업무범위 확대 신청 가능                                                                                                                                                                                                                                                                                                                                                                                                                                                                                                                                                                                                      |                                                                                                                          |
|      | 증권투자자<br>금관리 | 외자비율 49%까지 허용                                                                                                                                                                                                                                                                                                                                                                                                                                                                                                                                                                                                                                                                                                                                            |                                                                                                                          |
|      | 증권투자자<br>문   | 홍콩, 마카오 증권회사에 국한. 출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
|      | 선물           | 홍콩, 마카오 증권회사에 국한. 출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
| 2014 |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요건: 외국인 독자은행 주주, 중외 합자은행 외국인 주주는 금융기구여야 하며, 외국인 단일 또는 주요 주주는 상업은행이어야 함.</li> <li>* 총자산요건: 외자법인은행 외국인 단일 또는 주요 주주,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은 일정 금액의 총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함.</li> <li>* 출자비율: 해외투자자가 중국자본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협동조합, 금융자산관리회사 등 은행업금융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단일주주 및 공동주주 출자비율 제한을 둠.</li> <li>* 외자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저 개업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li>* 업무범위: 외국은행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이 허가하는 ‘정부채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위탁판매’, ‘대리수불’, ‘은행카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당 100만 위안 이상의 정기예금 업무 이외에는 중국 내 중국 공민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업무 종사 불가</li> <li>* 운영지표: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본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으며, 운영자금의 일부는 특정 형식으로 존재하며 상응하는 관리요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li> <li>* 외국은행 지점은 위안화 운영자금 충족율(8%)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li>* 외자은행은 위안화 업무에 종사하려면 최저 개업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기관의 은행업 진출 조건, 업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li> <li>-(참고) 외자 선물회사의 중국시장 진입 허용</li> </ul> |
|      | 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는 제한목록에 속하며,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li> <li>* 단일 해외투자자의 중국자본 상장증권사 주식 보유 비율은 20% 이하, 공동투자자의 경우 합계 25% 이하로 제한</li> </ul>                                                                                                                                                                                                                                                                                                                                                                                                                                                                                                                                                                                            |                                                                                                                          |
|      | 증권투자자<br>금관리 | 증권투자자금관리회사는 제한목록에 속하며,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



|      |              |                                                                                                                                                                                                                                                                                                                                                                                                                                                                                                                                                                                                                                                                                                       |                                                                                                                                                                                                                                          |
|------|--------------|-------------------------------------------------------------------------------------------------------------------------------------------------------------------------------------------------------------------------------------------------------------------------------------------------------------------------------------------------------------------------------------------------------------------------------------------------------------------------------------------------------------------------------------------------------------------------------------------------------------------------------------------------------------------------------------------------------|------------------------------------------------------------------------------------------------------------------------------------------------------------------------------------------------------------------------------------------|
|      | 선물           | 제한류에 속하며,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
| 2015 |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요건: 외국인 독자은행 주주, 중외 합자은행 외국인 주주는 금융기구여야 하며, 외국인 단일 또는 주요 주주는 상업은행이어야 함.</li> <li>* 총자산요건: 외자법인은행 외국인 단일 또는 주요 주주,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은 일정 금액의 총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함.</li> <li>* 출자비율: 해외투자자가 중국자본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협동조합, 금융자산관리회사 등 은행업금융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단일주주 및 공동주주 출자비율 제한을 둠.</li> <li>* 업무범위: 외국은행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이 허가하는 '정부채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위탁판매', '대리수불', '은행카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당 100만 위안 이상의 정기예금 업무 이외에는 중국 내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업무 종사 불가</li> <li>* 운영지표: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본점으로부터 무상 제공 받으며, 운영자금의 일부는 특정 형식으로 존재하며 상응하는 관리요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li> <li>* 외국은행 지점은 위안화 운영자금 충족율(8%)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li>* 외자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저 개업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ul> | - 2014년 내용과 동일<br>(은행, 증권업에 한함)                                                                                                                                                                                                          |
|      | 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는 제한목록에 속하며,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li> <li>* 단일 해외투자자의 중국자본 상장증권사 주식 보유 비율은 20% 이하, 공동투자자의 경우 합계 25% 이하로 제한</li> </ul>                                                                                                                                                                                                                                                                                                                                                                                                                                                                                                                                         |                                                                                                                                                                                                                                          |
|      | 증권투자자<br>금관리 | 증권투자자금관리회사는 제한목록에 속하며,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
|      | 선물           |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                                                                                                                                                                                                                                          |
| 2017 |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요건: 외국인 독자은행 주주, 중외 합자은행 외국인 주주는 금융기구이어야 하며, 외국인 단일 또는 주요 주주는 상업은행이어야 함.</li> <li>* 총자산요건: 은행 지배주주 권익을 취득한 외국투자자 및 중국자본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춘진은행, 대출회사 및 기타 은행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신청 1년 전 연말 기준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li> <li>* 출자비율: 단일출자의 경우 20%, 공동출자의 경우 합계 25%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업무범위: 외국은행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이 허가하는 '대리수불', '은행카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당 100만 위안 이상의 정기예금 업무 이외에는 중국 내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업무 종사 불가</li> <li>* 운영지표: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운영자금을 2억 위안 이상 또는 등가 자유태환화폐로 무상 제공 받으며, 운영자금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 진출 외국투자자의 총자산요건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명시</li> <li>- 외국은행 지점이 '정부채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위탁판매'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li> <li>- 외자은행이 위안화 업무에 종사하려면 적용되었던 최저 개업시간 요건을 폐지함.</li> <li>- 외국은행 지점 운영자금 금액을 명시(2</li> </ul> |
|      |              |                                                                                                                                                                                                                                                                                                                                                                                                                                                                                                                                                                                                                                                                                                       |                                                                                                                                                                                                                                          |

|  |              |                                                                                                                         |          |
|--|--------------|-------------------------------------------------------------------------------------------------------------------------|----------|
|  |              | 30%는 지정된 증식자산 형식으로 존재해야 하며, 정기예금 형식으로 존재하는 증식자산은 중국 내 3곳 이하의 중국자본은행에 예치해야 함.<br>* 외국은행 지점은 위안화 운영자금 충족율(8%)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억 위안 이상) |
|  | 증권           | *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br>* 단일 해외투자자의 중국자본 상장증권사 주식 보유 비율은 20% 이하, 공동투자의 경우 합계 25% 이하로 제한                                     |          |
|  | 증권투자기<br>금관리 |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
|  | 선물           | 외자비율은 49%까지 허용                                                                                                          |          |

자료: 해당 연도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록 3. 외자은행의 대중국 은행 및 증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은행(내국인)<br>상업은행법                                                                                                                                                                                                                                          | 은행(외국인)<br>외자은행관리조례                                                                                                                                                                                                                                                                                                                                                                                                                                                                                                                                                                                               | 증권사(내국인)<br>회사법 <sup>51)</sup>                                                                                                                                                                                                                 | 증권사(외국인)<br>외자증권사설립규칙                                                                                                                                                                                                                                                                                                                                                                                                                                                                                                                                                   |
|-----------------------------------------------------------------------------------------------------------------------------------------------------------------------------------------------------------------------------------------------------------|-------------------------------------------------------------------------------------------------------------------------------------------------------------------------------------------------------------------------------------------------------------------------------------------------------------------------------------------------------------------------------------------------------------------------------------------------------------------------------------------------------------------------------------------------------------------------------------------------------------------|------------------------------------------------------------------------------------------------------------------------------------------------------------------------------------------------------------------------------------------------|-------------------------------------------------------------------------------------------------------------------------------------------------------------------------------------------------------------------------------------------------------------------------------------------------------------------------------------------------------------------------------------------------------------------------------------------------------------------------------------------------------------------------------------------------------------------------|
| 1) 정관의 초안<br>2) 임명 예정인 이사, 고급<br>관리인원의 자격증명서<br>3) 법정 자료증명기관이 작<br>성한 자료증명서<br>4) 주주명부, 그 출자액 및<br>지분<br>5) 등록자본금의 5% 이상<br>을 소지한 주주의 신용<br>증명과 관련 자료<br>6) 경영방침과 계획<br>7) 영업장소, 보안 시스템<br>및 업무관련 기타 시설<br>에 관한 자료<br>8) 국무원은행업감독기구가<br>규정한 기타 서류 및<br>자료 | <b>* 설립계획 신청:</b><br>1) 설립예정조직의 명칭, 소<br>재지, 등록자본, 또는 운<br>영자금, 경영 신청 업무<br>의 종류 등이 포함된 신<br>청서<br>2) 타당성연구보고서<br>3)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중<br>외합자은행의 정관 초안<br>4)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br>중외합자은행의 각 주주<br>가 서명한 경영계약<br>5)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br>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br>는 지점설립예정 외국은<br>행의 정관<br>6)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br>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br>는 지점설립예정 외국은<br>행 및 그 소속그룹의 조<br>직도, 주요 주주 명부,<br>해외 지점·사무소 및 관<br>련 기업 명부<br>7)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br>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br>는 지점설립예정 외국은<br>행의 최근 3년간 연차<br>보고서<br>8)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br>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br>는 지점설립예정 외국은<br>행의 자금세탁방지제도<br>9)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br>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br>는 지점설립예정 외국은<br>행 소재 국가 또는 지역<br>의 금융감독 당국이 발 | 1) 회사등기 신청서<br>2) 창립대회의 회의록<br>3) 회사정관<br>4) 출자검증 증명서<br>5) 법정대표자, 이사, 감사의<br>임명문건 및 신분증명<br>6) 발기인의 법인자격 증명<br>또는 자연인 신분증명<br>7) 회사주소 증명<br><br>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되<br>는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을<br>공개발행하는 경우, 회사등<br>기기관에 국무원 증권감독<br>관리기관의 비준문건을 제<br>출하여야 함. | <b>설립신청:</b><br>1) 외국인주주와 중국주주의<br>법정대표자가 공동으로<br>서명한 신청서<br>2) 외자증권사 설립에 대한<br>계약 및 정관 초안<br>3) 임원예정자가 임직조건에<br>부합한다는 자격증명 서류<br>4) 주주의 사업허가증 및 증<br>권거래자격증명서 사본<br>5) 국내외 주주의 신청 전 3<br>년간 감사보고서<br>6) 외국인주주 소재 국가나<br>지역의 관련 감독기관 또<br>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br>인가한 해외기관에서 발<br>급한 해당 외국인 주주가<br>본 규칙 제77조 제2항<br>내지 제4항의 요건에 부<br>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br>명서<br>7) 중국 경내 법률 사무소에<br>서 발급한 법률소견서<br>8)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br>구하는 기타 서류<br><br><b>* 증권업 인가 신청:</b><br>1) 사업허가증 사본<br>2) 회사 정관<br>3) 중국 경내 증권관련 업무<br>자격이 있는 회계사무소에<br>서 발급한 자본심사 보고<br>4) 이사, 감사, 임원 및 주요<br>직원들의 명단, 임직자격증 |

|  |                                                                                                                                                                                                                                                                                                                                     |  |                                                                                                      |
|--|-------------------------------------------------------------------------------------------------------------------------------------------------------------------------------------------------------------------------------------------------------------------------------------------------------------------------------------|--|------------------------------------------------------------------------------------------------------|
|  | <p>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금융 허가 서류 사본 및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p> <p>10)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서류</p> <p><b>* 영업 신청:</b></p> <p>1) 설립예정 조직의 주요 책임자 명부 및 이력서</p> <p>2) 당해 조직에 근무할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서</p> <p>3) 법정 자금납입증명기관에서 발급한 자금납입증명</p> <p>4) 보안 시스템 및 기타 업무 유관시설과 관련된 자료</p> <p>5) 지점을 설립하는 외국은행의 당해 지점 세무, 채무에 대한 책임보증서</p> <p>6)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서류</p> |  | <p>명서, 증권조사자격증명서</p> <p>5) 내부통제제도 서류</p> <p>6) 영업장소 및 업무설비상황 설명서</p> <p>7)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p> |
|--|-------------------------------------------------------------------------------------------------------------------------------------------------------------------------------------------------------------------------------------------------------------------------------------------------------------------------------------|--|------------------------------------------------------------------------------------------------------|

자료: 중국 상업은행법, 외자은행관리조례, 회사법, 외자증권사설립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1) 중국 증권법에는 증권회사의 설립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123조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표는 회사법에 따른 주식유한회사 설립 신청서류를 내국인의 증권사 설립 신청서류로 간주하였음.